

[별표 8] <개정 1987·8·31>

검정계량기의 종류(제25조 관련)

1. 길이계
 - 가. 택시미터
 2. 질량계
 - 가. 부등비접시수동저울(최소눈금값이 1g이상의 것)
 - 나. 판수동저울
 - 다. 접시지시저울(스프링식의 것을 말하며, 끝달림이 2kg이하로서 가정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)
 - 라. 전기식지시저울(최소눈금값이 1mg이상의 것을 말하며, 체중계로서 가정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)
 - 마. 분동
 - 바. 추
 3. 온도계
 - 가. 체온계
 - ㄱ. 유리제 체온계
 - ㄴ. 전자식 체온계
 4. 부피계
 - 가. 가스미터(사용압력 1수주미터 이하, 최대유량이 200m³/h이하의 것을 말한다)
 - 나. 적산식 가설린미터
 - 다. 액화석유 가스미터(구경이 40mm이하의 것을 말한다)
 - 라. 수도미터(사용 최고압력이 7.5kg/cm²이하로서 구경이 350mm이하인 온수미터를 말한다)
 - 마. 오일미터(실측식의 것으로서 구경이 100mm이하의 것을 말한다)
 - 바. 눈새김 탱크
 - 사. 눈새김탱크로오리(분뇨수거용을 제외한다)
 5. 압력계
 - 가. 혈압계
 6. 열량계
 - 가. 적산식 열량계
 7. 전기계기
 - 가. 전력량계
- 비고 :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검정계량기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추출방식에 의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.